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ne 23,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덴마크: 이전가격 규정 간소화 및 문서화 부담 경감 조치 발표(2025 년부터 시행)

2025 년 6 월 3 일, 덴마크 의회는 덴마크 세무통제법(Tax Control Act) 제 39 조 및 제 40 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덴마크 내 납세자의 이전가격 준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개정된 규정은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2022 과세연도에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한 약 1,500 개 기업이 향후 문서화 요건에서 면제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신규 기준금액 및 면제요건 도입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DKK 500 만 미만이고, 그룹 내 채권 및 채무가 DKK 5,000 만 미만인 경우, 납세자는 문서화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문서화 의무가 여전히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법령에 따라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는 문서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배당금지급
 - 자본투자
 - 소액의 수동적 투자
 - 그밖의 중요하지 않은 거래

반면, 덴마크 감가상각법(Danish Depreciation Act) 제 40 조에 따른 거래 및 덴마크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비(非) EU/EEA 국가와의 거래는 여전히 문서화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덴마크 세무당국이 더 이상 감사인의 확인서(opinion statement)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세무당국이 임의로 소득을 재산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가격 문서 제출기한(기존 60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세 신고기한과 이전가격 문서 제출기한이 별도로 운영되어 각각 연장을 신청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이전가격 문서 제출기한도 자동으로 동일 기간만큼 연장되었습니다.

독일: AO §153 (4) 조항 도입에 따른 영향

AO §153 (1)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신고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여 이로 인해 세액이 감소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세무당국에 통지하고 수정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된 AO §153 (4)은 외부 세무조사 결과가 확정적으로 (불복 없이) 세무조정예 반영된 경우, 그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세무신고서(예: 후속 과세연도 등)에도 해당 사실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조항은 2024 년 12 월 31 일 이후 발생하는 세무조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전 과세연도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무조사 결과가 세무조정 통지서에 반영되고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조항은 세무조사 결과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타 신고서의 과세표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수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전가격 이슈의 경우 사실관계(이익률, 비교가능회사, 기능분석 등)가 후속 과세연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거나 지속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KPMG 의견

AO § 153 (4)은 이전가격 이슈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종료 시 § 153 (4)의 적용여부 및 향후 반영 여부에 대해 명확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정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 153 (1)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시효가 남아있는 과세연도에 기존 세무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자발적 수정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4-법규국조-0250, 2025.04.28

제목: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 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법인은 국내외 석유자원개발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에 광구를 보유한 외국법인(네덜란드 소재)의 지분을 인수하고, 외국법인은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와 지점세 (BPT, Branch Profit Tax)를 납부하고 있음
- 해당 지점소득은 외국법인의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만, 네덜란드 세법상 객체 면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됨

2. 질의요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국조법 제17조)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국조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27조 제1항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납부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4.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03 관세

미국 철강 파생제품 관세 확대 조치에 따른 한국 수출 영향 분석

1. 개요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를 근거로, 2018년부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2025년 6월에는 그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원자재에서 철강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하는 완성품(철강 파생제품)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발표된 바에 따르면,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냉동고 등 총 11개 품목이 신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품목의 철강 구성가치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도 별도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의 원자재 중심 조치를 넘어 부품·완성품 등 간접 철강 사용 제품 전반에 통상 리스크가 확산되는 구조적 변화로, 글로벌 제조 및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상세

(1) 관세 적용 품목 (파생제품)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1개 품목을 철강 파생제품(derivative steel articles)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철강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 있는 완성품 형태의 소비재 및 산업용 조립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냉장·냉동고류(HTS 8418.108418.40), 세탁기 및 의류건조기(8450.118451.29), 식기세척기(8422.11), 전기오븐 및 스토브(8516.60),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8509.80), 그리고 철망 선반 등 금속재 조립가구류(9403.99)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구조적으로 철강이 외관, 프레임, 선반, 드럼, 도어 프레임 등의 주요 부위에 사용되어 있어, 제품 단위에서 철강 함량을 분리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철강 파생제품(derivative steel articles) 신규 지정 HTS CODE]

구분	HTS Code (미국)	품목 예시
냉장기기	8418.10.00	냉장·냉동 겸용형 프리저
	8418.30.00	상업용 체스트형 냉동장치
	8418.40.00	직립형(업라이트) 냉동고
세탁기기	8450.11.00	탑 오픈 방식 세탁기
	8450.20.00	세탁-건조 겸용기
	8451.21.00	소형 의류 건조기
	8451.29.00	대형 의류 건조기
식기·조리	8422.11.00	식기세척기
	8516.60.40	전기 오븐, 스토브
기타	8509.80.20	음식물 폐기 분쇄기
	9403.99.9020	철망 선반 (Welded Wire Rack)

※ 출처: 관세청 (KCS), U.S. Federal Register, Presidential Proclamation 10896, 2025.06.12

(2) 파생제품 판정 기준 및 철강 함량 산정 방식

- Section 232 관세는 해당 제품이 미 상무부가 지정한 파생제품 HTS 코드(총 11개 코드군)에 포함될 경우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 제품 내 철강으로 구성된 가치(FOB 기준)에 한하여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 철강가치는 제품 총가치 중 철강 재질로 제작된 부품의 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철강 부품(플라스틱, 유리 등) 또는 조립공정, 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서 Section 232 세관 신고 시, 수입자는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① **HTS Code:** 파생제품 지정 여부 확인
 - ② **철강가치(Steel Value):** 철강으로 구성된 부품의 FOB 가치
 - ③ **Melt and Pour Country:** 철강이 제련(melt) 및 성형(pour)된 국가
 - ④ **Steel Mill Certificate (요청 시):** 철강 원산지 및 생산 이력 증명

-
- CBP는 철강 가치 산정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경우, 제품 전체 가격을 철강가치로 간주하여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세금액이 실질적으로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Section 232 적용 여부는 HTS 코드 지정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관세 산정은 신고된 철강가치에만 한정되며, 이 가치 산정의 정확성과 입증자료의 제출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참고 자료 : CBP CSMS #41541908: Steel and Aluminum Derivatives Reporting Guidelines & CBP ACE CATAIR Appendix B – Steel Import Requirements

(3) 관세청 HTS-HSK 연계표 발표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표준 품목분류체계(HS)는 6단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부터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자가 사용하는 HSK 코드와 미국 측에서 수입신고 시 사용하는 HTS 코드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이 미국의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의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Section 232)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16일 미국 측 11개 HTS 코드와 우리나라의 HSK 10단위 코드 간의 매칭 정보를 담은 연계표를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연계표에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음식물 처리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294개의 한국 품목코드와 미국 HTS 코드 간의 대응 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계표를 통해 수출기업은 자사 제품의 HSK 코드로 미국에서 해당 품목이 Section 232 관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철강 구성비 예시도 포함되어 있어 제품별 관세 시뮬레이션 수행도 가능합니다.

3. 대응전략

이번 조치는 철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철강을 소재로 활용하는 가전, 기계, 산업기기 등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내 철강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은 기존의 원자재 중심 관세체계와는 차별화되는 조치로, 완성품, 모듈, 부품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수출 전략과 공급망 운영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일부 생산공정을 운영하더라도 제품에 사용된 철강이 미국산이 아닐 경우에는 Section 232 조치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현지 조립 방식만으로는 관세 회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KPMG 의견]

미국의 철강 파생제품 관세 확대 조치는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제품 내 철강 함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단순한 원산지 이전이나 현지 생산 확대만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 제품에 포함된 철강 사용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거래 유형에 따라 철강가치 산정 기준, 원산지 정보, 세관 신고자료 등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정비해야 합니다. 향후 파생제품의 품목 확대 가능성과 산업 확장성까지 고려할 때, 내부 기준과 제출 자료의 문서화, HS 코드별 사전 리스크 검토, 수입자와의 신고 정합성 확보가 실질 대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세 리스크 점검체계 및 글로벌 통상 정책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이 요구됩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